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장규권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01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
발 의 자 : 장규권 의원

찬 성 자 : 윤영희,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국가적으로 저출산·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모유수유실의 설치 권고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
라.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, 서울특별시,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마. 모유수유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시행에
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제10조의3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9. 6. ~ 9. 1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모유수유실”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.
3. “모유착유실”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모유수유실의 설치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(이하 “모유수유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도록 권장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 및 산하기관
2. 공공건물(우체국, 도서관, 공연장 등)

3. 공중이용시설(대형마트, 공원 등)
4.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4조(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)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모성·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, 서울특별시,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,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·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모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2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1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 29.] 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>

1. “장애인등”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